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1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5
1. 법률안의 입법 배경	5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8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0
4. 제정안의 총괄적 검토	18
V. 조문별 검토	30
1. 총칙	30
가. 목적규정	35
나. 정의규정	36
2. 계획 수립 및 대비	40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	47
나.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도	49
3. 산림재난 예방	52

가.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63
나. 산불방지대책본부 등 설치	67
다. 산불예방 등	68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70
4. 산림재난 대응 등	74
가.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88
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89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대한 협조	93
라. 산불진화단 설치	94
마. 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95
바.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97
사. 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98
5.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100
가. 산불조사,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불 대응분석·평가	104
6.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109
가. 산림재난방지기반시설의 설치	114
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114
다. 산림재난방지 교육	117
7.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123
8. 보칙	131

가.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136
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37
다.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보완 필요	137
라. 포상	13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4. 06. 07.

다. 회 부 일 : 2024. 06. 11.

II.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과 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정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분석·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차.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IV. 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1. 법률안의 입법 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림재난은 다양화 및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2023년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피해)으로 인한 피해면적 및 피해 고사목을 살펴보면, 각각 4,992ha, 459ha 및 107만 그루로 파악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해서 1.2배(ha), 1.8배(459ha), 1.1배(107만 그루)¹⁾가 증가한 것임.

【 산림재난 발생 현황 】

산불 피해면적		산사태 피해면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10년 평균	'23년	10년 평균	'23년	10년 평균	'23년
4,004ha	4,992ha	258ha	459ha	96만그루	107만그루

자료 : 산림청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이하 “산림재난”)은 발생하게 되면,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피해규모 예측은 불가능하고 인근 산림 및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1)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2014년 대발생(218만그루) 이후 피해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107만그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 현황 】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강원 영월
발생일			'22.3.4.(금)	'22.3.5.(토)	'22.3.4.(금)
피해 면적	합계	20,707	16,302 (울진 14,140, 삼척 2,162)	4,190 (강릉 1,455, 동해 2,735)	184
피해 금액	합계	167,456	139,773 (울진 131,848, 삼척 7,925)	26,840 (강릉 9,551, 동해 17,289)	843

자료 : 산림청

【 2023년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 피해현황 】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경남 합천	경남 하동	대전· 금산	충남 홍성	충남 당진	충남 보령	충남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합평	전남 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발생일			3.8.	3.11	4.2.	4.2.	4.2.	4.2.	4.2.	4.2.	4.3.	4.3.	4.3.	4.11.
피해 면적	합계	4,075	179	129	889	1,337	99	97	24	85	682	188	245	121
피해 금액	합계	38,748	1,520	4,711	959	21,647	819	1,064	231	325	2,082	3,030	706	1,654

자료 : 산림청

그런데, 현행 「산림보호법」은 i)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²⁾ 등 산림보호와 관련된 사항과 ii) 수목진료 및 나무의사 등 수목 치료에 대한 제도³⁾ 등 다양한 사항을

2)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관련 규정(제7조부터 제19조까지)

3) 「산림보호법」: 수목치료 및 나무의사 관련 규정(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14까지)

규정하고 있어,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임.

또한, 현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재난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난 분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⁴⁾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산림재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산림재난 분야에 대한 개별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재난별 특성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참고자료 1),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및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일부 산림재난 예방 및 긴급조치, 재난기반시설, 한국산림재난기술공단 등 산림재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관리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4) 「재난안전법」에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불, 산불방지, 산불유관기관, 산사태, 산사태예방, 산사태유관기관,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정보체계” 등 용어를 비롯하여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등으로 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및 복원에 이르기까지 산림재난에 특화된 하나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선제적으로 산림재난에 대응 및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고, 산림청도 이러한 제정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지정·관리, 수목 치료 제도(나무의사)에 관한 일부 규정들만 남겨지게 됨으로써, 「산림보호법」(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제정 당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자연적·인위적 산림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법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법 의지⁵⁾ 및 이를

5) 「산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4., pp.7~8.

반영한 법 제명과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보이고,

같은 법 제1조(목적) 중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산림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원칙, 제4조(적용범위) 중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중 “산불 예방, 산불 진화”에 관한 내용 등이 제정안 부칙에 따라 산림 재난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산림보호법」과 부합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산림보호법」의 개정 절차가 필요해 보임.

“이 법안은 (중략) 산림보호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산림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9개의 장, 9개의 절, 80개의 조 및 부칙 11개의 조로 구성되는데, 본칙은 총칙,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 예방, 산림재난 대응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보칙 및 별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현행 「산림보호법」 상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 대비 제정안을 비교하면, 제정안에는 산림재난 예방, 산림재난 대응 등, 재난방지 기반조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관한 사항 등 26개의 조가 새로이 추가됨.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정의	- 산림재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산림재난 위험지도,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복구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 및 대응·복구·복원하고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조	적용범위	- 산불과 산사태에 관한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을, 산림병해충은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에 대해 적용
제5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림재난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름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8조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9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10조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위험지도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를 실행하고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작성·배포하여야 함
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예측정보, 위험지도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산림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에 활용하여야 함
제12조	산림재난상황실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재난별 지원인력을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14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방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
제15조	산불 예방 등	- 산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장비 점검 및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산불방지 사업의 수행 -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제16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 피우거나 담배 꽂초를 버리는 행위 등 금지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 다만,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허용 가능 - 시장·군수 등은 산불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불조심기간 중에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
제2절 산사태 예방		
제17조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 설치·운영	- 산림청장은 산사태조심기간 동안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제18조	산사태 예방 등	-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산사태 관계인”이라 한다)은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제19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제20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제21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사방시설 훼손, 사방시설 설치·관리 거부 또는 방해 행위) 규정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지 매수·교환	- 산사태취약지역 및 그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
제3절 산림병해충 예방		
제25조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대책본부	-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 중앙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제26조	산림병해충 예방 등	-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제27조	예찰	-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예찰의 방법, 시기 및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마련 -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진화 등		
제28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 및 공고
제29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산불 경보가 발령되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의 의무화
제30조	산불 신고 및 보고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 활동을 실시
제31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	-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여 해당 및 인접지역의 산불진화 자원 동원을 요청
제32조	대피명령 및 강제 대피조치	-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 대피명령 및 강제 대피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요청
제33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지휘하되, 국유림·공유림·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 -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 다만, 산불이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제34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산불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방지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 체계를 구축
제35조	협조	- 산림청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소방 지원활동), 경찰, 군부대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 및 요청받은 기관의 장에게 협조 의무 부과
제36조	산불진화단 등 설치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진화단 설치·운영하고 산불의 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지휘·통솔 등의 업무를 수행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 주민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설치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2절 산사태 대응		
제37조	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등	- 산림청장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사태 조심기간으로 지정
제38조	산사태 신고 및 보고	- 산사태를 보거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등은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제39조	산사태대응팀 설치	- 산림청장 등은 산사태 예방·대응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
제40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등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 -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 대피명령 및 강제 대피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요청
제41조	산사태 긴급점검	-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지시
제3절 산림병해충 대응 등		
제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산림청, 지역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관에 신고 -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 명령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방제에 관한 조치를 명령
제44조	방제	- 산림병해충 방제 시 일시·지역·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하며,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방제 후에 공고
제45조	방제사업 설계·감리	- 일정 규모 이상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며,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종류 규정
제46조	산림병해충 특별 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 산림청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은 예찰·방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설치 - 산림청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은 신속한 예찰·방제 추진을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복구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48조	산불 조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산불조사를 실시
제49조	산불피해지 복구 등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
제50조	산불 대응분석·평가	-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2절 산사태 조사·복구		
제51조	산사태 조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산사태 원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산사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52조	산사태 발생지 복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
제53조	산사태 대응분석·평가	-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54조	산림병해충 조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림병해충 조사를 실시
제55조	방제효과조사	-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효과조사를 실시
제56조	산림병해충 대응 분석·평가	-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 기관의 장에게 통지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57조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도, 사방댐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을 설치
제58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 산림청장은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제59조	산림항공기 운용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활동,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등의 사고 예방과 대응, 산림오염 방지·정화 및 산림사업 지원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용
제60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산림재난방지 교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
제61조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 실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사업 수행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62조	한국산림재난안전 기술공단 설립 등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 - 공단은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이사장·임원·직원을 두고 산림재난방지의 지원사업을 수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 - 공단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사업의 수입금, 기부금 등 -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서를 제출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림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
제63조	정관	
제64조	임원 및 직원	
제6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66조	사업	
제67조	공단의 운영비	
제68조	예산과 결산	
제69조	업무 지도·감독	
제70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제7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제72조	산림재난보험 등 가입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난보험 가입을 권장
제73조	포상	- 산림재난방지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제74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잠시 사용,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 가능
제75조	권리·의무 등 승계	-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및 신청·신고는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산불조사·산사태 조사 및 산림병해충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제77조	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어기거나 게을리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직원을 문책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과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 설치·관리를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 산림재난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미수범에 대하여 벌금형
제80조	과태료	- 기타 산림재난 관련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산림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간주
제4조	장기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산불방지장기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간주
제5조	연도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은 이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으로 간주
제6조	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은 이 법 제43조에 따른 명령으로 간주
제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간주
제8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간주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산림보호법」을 적용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망사업법, 산림보호법 등 개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봄

4. 제정안의 총괄적 검토

제정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림보호법」상 분리·이관된 관련 조문이 산림재난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분리·이관하여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처럼 「산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림보호법」상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취지의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미발의된 상태임.

제정안에서는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보호법」상 관련 조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잔존하는 산림보호법 조문간 서로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생하는데, “다른 법률의 개정”이란 법률 형식적 측면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산림보호법」의 실체적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제방식으로 보기에 어려움.

따라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림보호법」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산림보호법」의 개정 입법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재난안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조문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중복된 측면이 있거나 산림재난의 특성과 관련성 및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임.

예를 들면, 안 제12조는 “산림청”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산림재난상황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⁶⁾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상황실⁷⁾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유사 기구의 설치로 인한 time lag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직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안 제13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를 차용하여 산림재난별 지원인력⁸⁾(안 제3

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7) 산림청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 1의3)에 따라 “산불 및 산사태”에 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임.

6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안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안 제46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월간 단위로 시기와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간지원인력을 연간 단위로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재난분야의 지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러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구조·구급대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전문인력 단위조직으로, 구조·구급 분야별 소방공무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 반면,

제정안의 산림재난별 지원인력은 산림재난별 특성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지원인력이라는 점에서, 119

8) 【 현행 산림재난대응단에 포함되는 산림재난별 민간지원인력 운영 체계 】

구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근무기간	6개월	5개월	10개월
근무시기	봄철(1.15~5.15) 가을철(10.15~12.15)	5.15~10.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집중운영(통상 10월~ 익년도 3월, 제주도는 4월까지)
규모	9,604명 (10명 내외 / 1개조) *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에 지원	190개단 760명 (4명/ 1개단) * 국유림관리소와 기초지 자체에 1개단씩 지원	375개단, 1,500명 (4명/1개단) * 국가 328명, 지자체 1,172명
주요업무	산불방지 계도,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장비 유지·관리 등	취약지역 점검 배수로 정비, 간단한 보, 주민대피 안내 피해지 조사·복구 지원	병해충 예찰 및 피해조사 피해목 시료채취, 검정·의뢰 지상방제(약제살포·나무주사) 피해목 제거(벌채·수집·파쇄)
비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자료 : 산림청

구조·구급대와 같이 인력을 통합·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조의 위치 및 제목은 “안 제2장(계획 수립 및 대비)”에서 “산림재난 대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림재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산림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하여 연중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재난안전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되 산림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차용함으로써 법체계상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조문은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셋째, 제정안은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에 산림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법」의 체계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산림복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

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의 이용 및 보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산림복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을 규정하면서⁹⁾, 목적규정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¹⁰⁾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대로 “복원”을 산림재난관리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재난관리에 복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재난안전법」의 목적 및 이념에 비추어 다소 부합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원에 관한 규정들과도 중복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9) 「재난안전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0) 「재난안전법」 제2조(정의)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넷째, 제정안은 산림재난별로 행정기관의 명칭을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산림재난방지에 있어 같은 기능 및 역할을 하는 같은 행정기관을 특별한 사유없이 달리 표현하거나 일부 조항에서는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혼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통일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 모순되는 문제가 있어 법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보이므로, 행정기관을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정안은 각 조 및 항에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i) 산불의 경우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장으로, ii) 산사태의 경우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으로, iii) 산림병해충의 경우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으로 달리 명칭하면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도 혼용하고 있어 법률용어의 통일성·일관성 및 법문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부 조문에서는 권한 주체가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문별로 관할 행정기관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 산림재난별 소관 기관 명칭 】

제정안		실제 업무 담당 기관					
조항	명칭	산림청	시·도	시·군·구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기타
제14조제1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림청장	○					
제14조제2항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	○	○	○	
제14조제4항 산불방지협의회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	○	○	○	○	○	
제15조제2항 산불 예방·진화체계	산림청장	○					
제15조제2항 산불 진화 조치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제15조제3항 산불방지 인력, 장비 및 예산 확보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15조제4항 산불방지 장비 등 점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15조제5항 산불방지 연구·조사 및 산불방지사업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15조제6항 산불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제16조제3항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		
제16조제4항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행위 금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지방산림청장			○	○		
제17조 산사태예방지원 본부 설치·운영	산림청장	○					
제18조 산사태 대비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	○	

제정안		실제 업무 담당 기관					
조항	명칭	산림청	시·도	시·군·구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기타
제19조 실태조사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제20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제21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 산지 매수·교환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	
제25조 제1항 중앙예찰·방제대책본 부 설치·운영	산림청장	○					
제25조제2항 지역예찰·방제대책본 부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	○	○	
제26조제2항 산림병해충 예방체계 구축	산림청장	○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산림병해충 예방 조치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소속 기관)
제27조제1항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청장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 (소속 기관)
제27조제2항 위험지역 실태조사	산림청장	○					
제28조제1항 산불위험지수 계산	산림청장	○					
제28조제2항 산불조심기간 등 설정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제29조제1항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발령	산림청장	○					
제29조제2항 산불경보별 필요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국립)

제정안		실제 업무 담당 기관					
조항	명칭	산림청	시·도	시·군·구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기타
조치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
제31조제1항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산림청장	○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33조제1항 산불진화 통합지휘 (중소형 산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산불진화 통합지휘 (대형 산불,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산불)	시도지사		○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산불진화 통합지휘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산불,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 대형산불)	산림청장	○					
제34조제1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유림관리소장	○	○	○		○	
제35조제1항 산불진화 협조요청	산림청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	○	○		○	
제36조제1항 산불진화단 등 설치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37조 산사태조심기간 설정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	○			
제38조 산사태 신고·보고	산림청장 및 지역 산사태관리기관의 장	○	○	○	○	○	
제39조 산사태대응팀 설치	산림청장 및 지역 산사태관리기관의 장	○	○	○	○	○	

제정안		실제 업무 담당 기관					
조항	명칭	산림청	시·도	시·군·구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기타
제40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등	산림청장 및 지역 산사태관리기관의 장	○	○	○	○	○	
제41조 산사태 긴급점검	산림청장 및 지역 산사태관리기관의 장	○	○	○	○	○	
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	○	○	○		
제44조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 (소속 기관)
제45조 방제사업 설계·감리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 (소속 기관)
제46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산림청장	○					
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산림청장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 (소속 기관)
제48조제1항 산불 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49조 산불피해지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50조 산불 대응분석·평가	산림청장	○					
제51조 산사태 조사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	
제52조 산사태 발생지 복구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	
제53조 산사태 대응 분석·평가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	○	○	○	

제정안		실제 업무 담당 기관					
조항	명칭	산림청	시·도	시·군·구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기타
제54조 산림병해충 조사	산림청장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 (소속 기관)
제55조 방제 효과조사	산림청장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	○	○	○	○	○	○ (소속 기관)
제56조 산림병해충 대응분석·평가	산림청장	○					
제57조 산림재난방지기반 시설의 설치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	○	○	○	○	○	
제59조 산림항공기 운영	산림청장	○					
제60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산림재난관리기관 의 장	○	○	○	○	○	
제61조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	○	○			
제7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제74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산림재난관리기관 의 장	○	○	○	○	○	
제76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산림재난관리기관 의 장	○	○	○	○	○	
제77조 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산림재난관리기관 의 장	○	○	○	○	○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림재난관리기관 의 장	○	○	○	○	○	

자료 : 산림청

다섯째, 제정안은 산림병해충의 예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산림 재난 예방) 제3절(산림병해충 예방)에서, 산림병해충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산림재난 대응 등) 제3절(산림병해충 대응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안 제2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제정안의 체계에 맞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의 정의를 수정하고,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의 체계는 산림재난을 예방 및 대응의 2개 장으로 나눠 산림재난별로 규정하는 방식이고, 안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르면 “방제”는 예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찰”은 조사 또는 진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데,

안 제3장 제3절에서는 안 제25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안 제26조(산림병해충 예방 등) 및 안 제27조(예찰)를,

안 제4장 제3절(산림병해충 대응 등)에서는 안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안 제44조(방제), 안 제45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안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의 규정을 각각 두고 있어 절 제목 및 제정안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제정안의 정의규정 중 “산림병해충 예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산림병해충 예찰의 개념을 포함하는 “산림병해충 예방” 및 산림병해충 제거를 뜻하는 “산림병해충 대응”으로 각각 정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V. 조문 별 검토¹¹⁾

1. 총칙

제정안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재난방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분야의 법률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산림재난 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림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다른 법률의 관계) 등 관련 조문을 이관 및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11)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에 관한 조항을 이관하고 있고, 일부는 「산림보호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법」에서 이관하거나 차용한 조문은 일부 생략하였음.

【 제정안 제1장 vs 「산림보호법」 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해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5.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나. 산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방지”라 한다)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

제 정 안	산림보호법
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6.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7.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 방지를 계획·실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산림청 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다. 지역산불관리기관: 산불의 예방·진화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라.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산사태의 예방·대응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마.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소속기관 8.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다음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산불방지유관기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산사태방지유관기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산림병해충유관기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9.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임상·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11.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2. “복구”란 산림재난 피해를 인공 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으로 훼손 이전의 상태로 시급히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3. “복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제 정 안	산림보호법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 및 대응·복구·복원하고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산불 및 산사태에 관한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은 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복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목적규정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이 빈발하고 있고 피해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산림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조직·인력 및 지원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체계에서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산림재난 분야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의 예방, 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입법필요성은 이해되고 산림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림재난관리에 “복원”을 포함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체계 정당성의 측면을 감안할 때, 「재난안전법」¹²⁾상 목적·이념에 다소 부합하지 않고, 복원은 산림재난관리의 측면보다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산림복지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12) 「재난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의규정

안 제2조는 「산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불방지, 산사태예방, 예찰, 방제, 산불유관기관, 산사태유관기관,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정보체계 등 용어들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한편, 산림재난정보시스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등 산림재난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일부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정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정의를 “산림재난방지를 계획·실행하는 기관”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역산불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역산사태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계획(기본·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주체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또한,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3조, 안 제60조제2항, 안 제71조 및 안 제74조제1항에서는 i) 산림청장이 다른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ii)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산림재난대응단·산림재난방지 교육·사상자에 대한 보상·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산림청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산림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과 동일하게 산림재난에 대처·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림재난 업무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관할 행정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제정안의 산림재난방지기관 vs 현행 「산림보호법」 상 해당기관 】

구분	제정안		현행 「산림보호법」	
내용	산림 재난 방지 기관 (안 제2조 ~제7조)	산림청장(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산불 관리	• 산림청장(중앙산불방지대책 본부장)
		①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기관 (제29조 및 제30조)	• 지역산불관리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장)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예방 기관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 산림청장(산사태예방지원본 부장)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지역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관 련 규정 없음

구분	제정안		현행 「산림보호법」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지자체,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 (제2조제6호, 제22조)	• 지자체, 산림청소속기관: 제2조제6호 •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 및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제22조

【 제정안의 산림재난방지기관 관련 조항 】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관련 정보
2.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산림재난예방·대응·복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 산사태 현장예방단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재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안 제2조제5호는 “산림재난방지”를 정의하면서 산불방지,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병해충 방제를 약칭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안 제6조 등에서는 약칭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2. 계획 수립 및 대비

제정안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시행계획 및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의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 제2장 vs 「산림보호법」 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교육·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 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8조(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군·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산림보호법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산림재난방지 시·도시행계획(이하 “시·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에 따라 연도별 산림재난방지 시·군·구시행계획(이하 “시·군·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도별계획과 지역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10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반영한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행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험도평가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관련 정보 2.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산림재난예방·대응·복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산림재난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림재난상황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 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한다. ② 제2조제7호다목에서 마목까지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산림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재난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상황실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다른 산림재난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산림재난방지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시·군·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연도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취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별로 각각 수립·시행되어 오던 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연계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립 및 추진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산림청장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및 보고를 통해 해당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 및 이행되는지 점검·확인이 가능하고, 산림재난 분야의 예방·대응 및 복구의 체계적·통일적 추진을 위한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재난안전법」¹³⁾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음.

13)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도

안 제10조는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에 따른 피해예측과 피해점감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다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¹⁴⁾상 산사태의 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관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산림재난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산림청장이 작성하는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10조제2항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활용하여 위험지도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은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제공을, 제5항은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의 하위 법령 위임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활용 등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14)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제정안은 산림청장이 모든 산림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5조에 따라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의 관할 행정청은 산림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므로, 안 제10조 및 안 제5조 간에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림재난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의 작성 및 활용 주체를 산림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¹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지역지진위험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장의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사항을 정리하면 산림재난별 특성에 맞추어 달리 규정되고 있는데, 위험도평가를 토대로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산림재난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한 이행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집행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에 따라 산림재난별 위험도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재난별로 다양하고 위험도평가

15)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 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같은 유사한 내용을 예찰·기초조사·실태조사 등으로 용어를 달리 표현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임.

따라서 산림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결과 → 현장조사 → 위험지역 지정 또는 입산통제 등 행정조치 순으로 조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정안의 산림재난별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 일련의 절차 】

구분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위험도평가 이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산림병해충 발생 우려 또는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
위험도평가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기초조사	해당 없음	위험도평가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실시	해당 없음
실태조사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실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실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실시
최종결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조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병해충 발생예보

자료 : 산림청

3. 산림재난 예방

제정안은 산불 예방,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등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산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산림병해충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제23조(예찰) 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 제3장 vs 「산림보호법」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1절 산불 예방 제14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 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

제 정 안	산림보호법
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하 “산불취약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제 정 안	산림보호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산사태 예방 제17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사태 예방 등)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산사태 관계인”이라 한다)은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대응·조사·복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	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말하며, 공·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산림과 연결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산사태 관계인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산사태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사태관계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사태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망담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망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망담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망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⑪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관리)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산사태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 등 토지 매수·교환)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

제 정 안	산림보호법
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예방 제25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이하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 방제(이하 “방제”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26조(산림병해충 예방 등) ①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시기,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과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안 제16조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로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 등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입산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을 적용되는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임.

제정안은 일정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인 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산림인접지역을 100미터로 설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i) 국내 사례¹⁶⁾로서 국립산림과학원¹⁷⁾은 산불 발생 시 옮겨 붙을 수 있는 비화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산림으로부터 3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¹⁸⁾를 설정하고

16) 2005년 양양산불 시 전소 및 반소된 주택은 산림으로부터 평균 22m, 최대 256m 거리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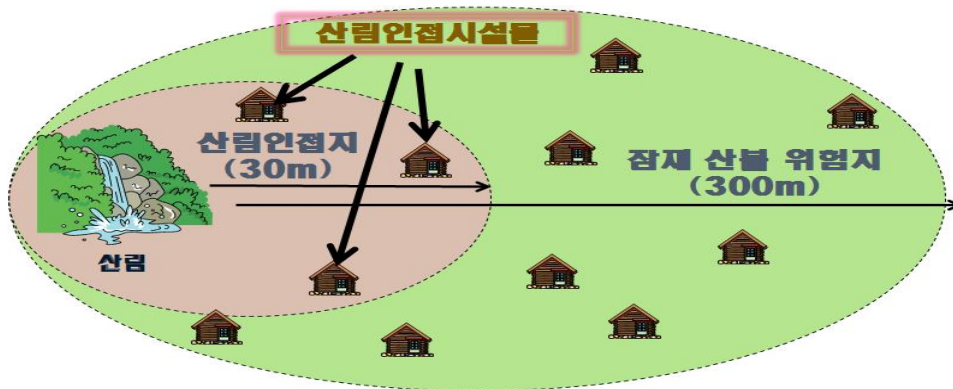
17) 「산림인접지 산불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2011.

18) 【 산림인접지역 정의 : 100미터 이내 】

있고, ii) 외국 사례로서 캐나다(British Columbia주)는 건축물로부터 100미터¹⁹⁾ 이내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림인접지역 거리를 100미터로 정하는 사항은 국내외 연구·사례, 현재 관리 상황²⁰⁾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둘째, 안 제16조제3항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를 허가받은 자는 불놓기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놓기 행위는 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²¹⁾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자료 : 산림청

19) 캐나다 산불관리 권고사항



자료 : 산림청

20) 현행 산림인접지역 범위는 '91.2.23부터 현재까지 100미터로 유지되고 있음(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2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산림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을 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셋째, 안 제16조제4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3%, 연평균 186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쓰레기소각(13%, 71건), 논·밭두렁소각(12%, 68건), 담뱃불 실화(6%, 34건), 성묘객 실화(3%, 18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

(단위: 건, ha)

구 분	2023년		10년 평균('14~'23)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계	596 (100%)	4,992.12 (100%)	566.8 (100%)	4,003.67 (100%)
입산자 실화	170 (29%)	1,390.63 (27.9%)	186.2 (33%)	688.04 (17.2%)
논·밭두렁소각	56 (9%)	264.22 (5.3%)	67.7 (12%)	78.36 (2.0%)
쓰레기 소각	73 (12%)	745.57 (14.9%)	71.5 (13%)	241.81 (6.0%)
담뱃불 실화	56 (9%)	1,469.14 (29.4%)	33.8 (6%)	174.64 (4.4%)
성묘객 실화	23 (4%)	50.71 (1.0%)	17.6 (3%)	12.40 (0.3%)
어린이불장난	1 (-%)	0.50 (-%)	1.8 (-%)	0.57 (-%)
건축물 화재	41 (7%)	38.26 (0.8%)	33.6 (6%)	50.45 (1.3%)
기 타	176 (30%)	1,033.09 (20.7%)	154.6 (27%)	2,757.40 (68.9%)

자료 : 산림청

또한, 같은 기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341건에 3,825ha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38건에 12.98ha, 대보름에 발생한 산불은 8.2건, 43.77ha인 것으로 나타나,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주요시기 】

(단위: 건, ha)

구분	봄철 산불조심기간 (2.1~5.1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12.15)		대보름		식목일 (청명·한식)		설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0년 평균	371	3,825.40	38	12.98	8.2	43.77	12.9	310.66	8.8	2.88
'23년	465	4,926.54	42	19.81	12	1.82	-	-	7	1.22

주) 대보름·식목일·설날은 전후 3일간 발생현황 합계

자료 : 산림청

이에 제정안은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산자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 소지를 금지하여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넷째, 언어적 일관성 측면에서 ‘같은 개념은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안 제16조제2항제1호 중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같은 조 제4항제1호는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로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나. 산불방지대책본부 등 설치

안 제14조는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산림청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기상상황 등에 따라 기간 조정)에 전국 300여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산불유관기관²²⁾과 협업을 위해 산불방지협의회 및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하고 있는데,²³⁾ 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는 “산불조심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는 안 제28조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안 제28조는 산불 예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의 위치를 제3장(산림재난 예방) 제1절(산불 예방)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22)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산불유관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군부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23) 「산림보호법」 제30조 참고

또한, 안 제12조는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지자체는 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재난상황실과 유사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중복설치로 인한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상황 대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해 보임.

특히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안 제12조에서 산림재난을 총괄하는 상시조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14조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한시적 조직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 조직의 역할에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보임.

오히려 유사 조직의 설치로 인하여 이들 조직 간 역할 기능 및 협업관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산림재난의 통합관리·운영이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힘들 수 있어 보임.

다. 산불예방 등

안 제15조는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이하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입산통제의 지정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산불취약지정에 관한 사항은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도 설치, 산불소화시설,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현행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5조제6항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행정조치로 「산림보호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i) 안 제16조에 따른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행위 금지, ii) 안 제57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항을 안 제15조제6항에 추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약칭²⁴⁾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안 제15조제6항에서만 사용되므로 약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음.

24) 약칭이란 법률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임.

둘째, 안 제15조제1항은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인데, 안 제18조에서는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산림 또는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부과하고 있고, 안 제75조에서는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사 업무 수행 시 권한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셋째, 안 제15조의 내용 중 산불 진화에 관한 사항은 “산불 예방”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안 제4장(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산불 진화 등)로 이동시켜 규정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안 제20조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공고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고시해야 하며,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도는 2012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도입되었는데, 2023년 말 기준 전국 28,988개소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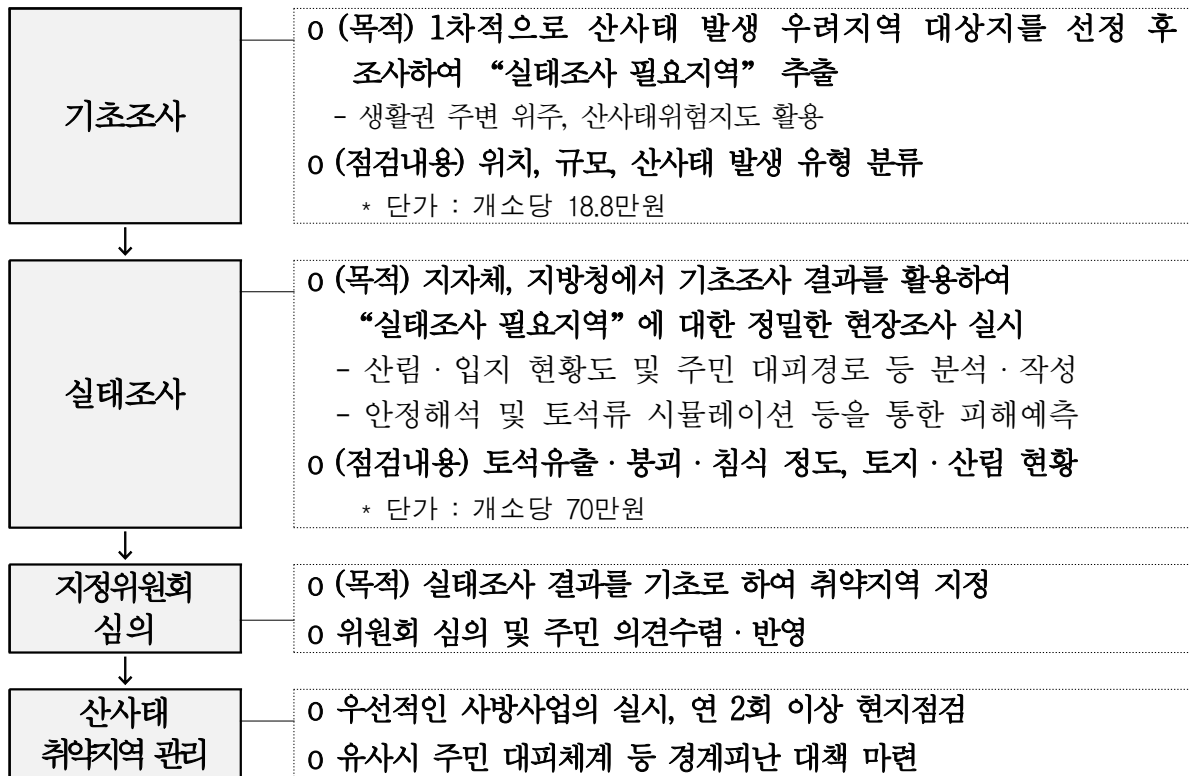
(2023년도 말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28,988	321	373	262	144	113	515	957	99	2,286	3,022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2,018	1,755	2,411	2,196	5,283	2,349	1,382	1,004	995	783	720

자료 : 산림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예정지 공고 → 관계인 의견수렴 및 지정위원회 심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위험이 해소된 경우 해제평가와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되고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자료 : 산림청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0조제1항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주체인 지역산사태 관리기관을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경우로 구분하여 괄호로써 표시하고 있으나, 산림 관할 행정청은 안 제5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주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임.

둘째,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행위 제한의 경우, 안 제20조제10항 및 안 제22조에서는 i) 위험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금지, ii)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iii) 사방시설 설치 또는 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열거되고 있음.

반면, 안 제15조제6항에서는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으로 소유권에 대한 고도의 제한이 있게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취약지역 및 산사태취약지역 간에 산림재난 상 위험성 또는 예방 책임의 정도가 상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산림재난 분야에서 예방조치의 수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각각 다르게 규정할 경우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산불취약지역 및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성 측면, 헌법이 보장하는 산림소유주의 기본권 제한 측면, 양 제도의 지정 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셋째, 안 제20조제1항은 산사태 우려지역의 대상 범위에 “산림과 연접한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땅깍기(절토), 흙쌓기(성토) 등 인위적 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모든 경사면을 포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4. 산림재난 대응 등

제정안은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산사태 대피 및 강제대피, 산불자율 진화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제정안은 산불 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산사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산림병해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제39조(협조),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4조(방제명령 등),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 제4장 vs 「산림보호법」 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1절 산불 진화 등 제28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산림청장은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산불 진화 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및 동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산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있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제3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① 제33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조) ① 산림청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제 정 안	산림보호법
한다)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산불진화단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4.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자율진화대에 구성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자율진화대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산사태 대응 제37조(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사태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 조심기간 중 산사태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 조심기간이나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사태 조심기간이나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같다. 제38조(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또는 산사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방지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사태대응팀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제 정 안	산림보호법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이나 강제대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사태 긴급점검)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산사태 긴급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대응 등 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에 있는 식물이나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또는 산림병해충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병해충유관기관이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①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 정 안	산림보호법
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방제) 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 정 안	산림보호법
③ 방제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①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예찰 및 방제 활동 2. 예찰·방제 사업의 현장지도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3.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4. 예찰·방제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예찰·방제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신속한 예찰·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안 제32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적 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재난안전법」은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재난안전법」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 명령의

요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안 제34조는 산불현장에 통합지휘본부 설치를 통해 산불진화의 지휘, 산불방지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산불 발생 시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i) 산림관서 또는 119 신고²⁵⁾ → ii)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관제²⁶⁾ 및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구성 → iii) 산불진화 인력·장비 투입 → iv) 산불진화의 절차로 대응하고 있고,

산불진화 관련 협조기관²⁷⁾으로는 i) 산불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이며, ii) 산불 확산 단계에서는 인접한 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 군부대, 경찰(현장 통제) 등이 지원하고 있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²⁸⁾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되어 관할 지역 외의 산불진화에도 지원하고 있음.

25) 119 산불신고 접수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산림청)과 산림 관서에 실시간 연계

26)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진화헬기 등 출동을 지시하고, 산불진화 완료 때까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실시간 산불 상황 공유

27) 「산림보호법」 제39조(협조)에 따라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에 대하여 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협조 요청할 수 있음.

28) 산불재난특수진화대(435명)는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연중 근무가능하도록 5개 지방산림청 및 27개 국유림관리소에만 배치되어 인접 시·군 등 산불발생 시 출동함.

한편, 산불발생 장소 및 규모에 따른 산불진화통합지휘본부의 지휘권자를 보면, 100ha 미만의 국유림(산림청 소관) 산불은 국유림관리소장, 100ha 미만의 국유림(산림청 소관 이외) 및 공·사유림 산불은 시장·군수·구청장, 100ha 이상의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과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장이 각각 통합지휘권자임.

【 산불진화 통합지휘권자 】

산불발생 장소 및 규모	지휘권자
· 100ha 미만의 국유림(산림청 소관) 산불 * 산불이 소관 국유림 외에 공사유림으로 확산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	국유림관리소장
· 100ha 미만의 국유림(산림청 소관 이외), 공유림, 사유림 산불	시장·군수·구청장
· 100ha 이상의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산불	시·도지사
·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장

자료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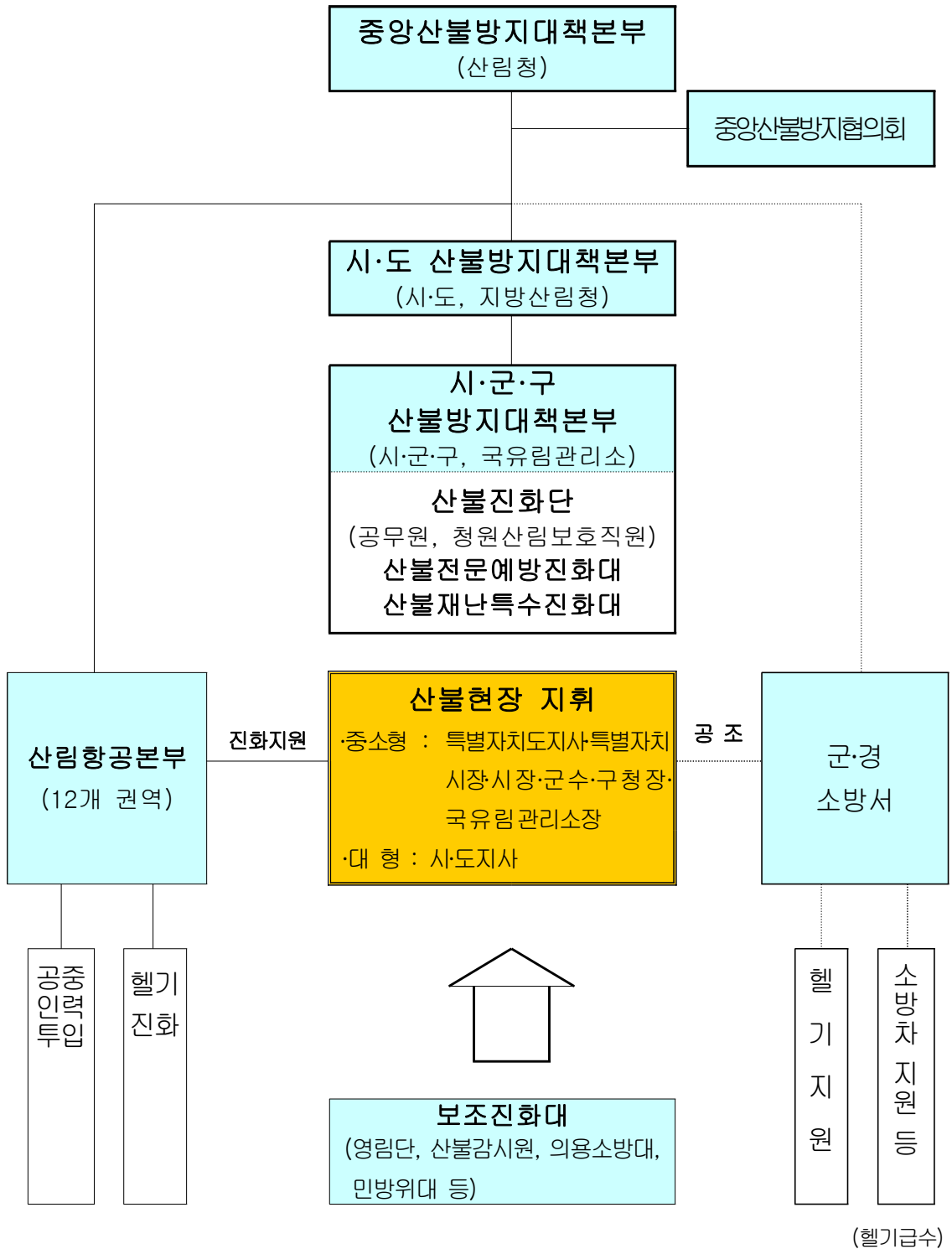
제정안은 현실에서 산불진화 현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합지휘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안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산림청) 및 산림재난상황실(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 산불의 예방·진화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안 제14조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지역산불관리기관)와의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지역산불관리기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각각 다른 용어로 명칭하고 있어 언어적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5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여 정리가 필요함.

【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불진화 체계도 】



자료 : 산림청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대한 협조

안 제35조는 산림청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방관서에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지원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7조²⁹⁾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협업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³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법」상 산불재난의 주관기관으로서 산림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산불진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소방청은 산불발생 시 소방관서는 「소방기본법」, 「재난안전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소방활동 및 긴급구조 시 협조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산림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29)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행정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 산림청의 의견, 소방청의 수용 곤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라. 산불진화단 등 설치

안 제36조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 중에 산불방지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산불자율진화대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지역산불관리기관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³¹⁾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³²⁾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산불이 연중화·대형화 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산불진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제정안은 산불진화단을 통해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역산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사업 종사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운영하는 등 산불진화

31)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024년 기준 현원 9,604명임.

32) 상시 산불대응을 위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된 산불진화 전문인력으로, 2024년 기준 현원 435명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마. 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안 제37조는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사태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법」³³⁾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28호)³⁴⁾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을 산사태 조심기간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면적은 2,586ha이고 인명피해(사망)는 27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20년도의 경우 피해면적은 1,343ha(6,175건)으로 같은 기간 총 피해면적의 51.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집중호우의 장기화 및 태풍에 따른 것으로 보임.

33) 「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 】

(단위 : ha, 백만원, 명)

연도	피해 면적		복구금액		인명피해(사망)		피해 기간
		국유림		국유림		국유림	
계	2,586	555	649,016	131,842	27	-	
2023	459 (2,410)	102 (526)	120,760	27,506	13	-	1차 (5.4.~5.6./집중호우) 2차 (6.25.~6.30./집중호우) 3차 (7.9.~7.19. /집중호우) 4차 (7.20.~7.27. /집중호우) 5차 (태풍 ‘카눈’)
2022	327 (1,278건)	117 (552건)	74,916	23,326	-	-	1차 (6.23.~6.24./집중호우) 2차 (6.28.~7.1./집중호우) 3차 (7.13.~7.14./집중호우) 4차 (8.8.~8.17./집중호우) 5차 (8.19.~8.20./집중호우) 6차 (태풍 ‘힌남노’)
2021	27 (190건)	1 (8건)	13,211	850	-	-	1차 집중호우(7.5.~7.8.) 2차 집중호우 (8.23.~8.24./태풍‘오마이스’) 3차 집중호우(8.31.~9.1.)
2020	1,343 (6,175건)	272 (1,876건)	331,684	66,663	9	-	1차 집중호우(6.12.~6.13.) 2차 집중호우(6.29.~6.30.) 3차 집중호우(7.12.~7.13.) 4차 집중호우(7.12.~7.13.) 5차 집중호우(7.28.~8.11.) 6차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2019	156 (1,644건)	32 (641건)	42,932	5,040	3	-	1차(7.19.~7.21./태풍‘다나스’) 2차(7.24.~7.28.) 3차(8.15~8.16./태풍‘크로사’) 4차(9.7~9.8./태풍‘링링’) 5차(10.2.~10.3./태풍‘미탁’)
2018	56 (381건)	5 (49건)	16,361	1,538	-	-	1차(6.26.~7.4./태풍“쁘라삐룬”) 2차(8.22.~8.25./태풍 “솔릭”) 3차(8.26.~9.1.) 4차(9.3.~9.4.) 5차(10.4.~10.7./태풍 “콩레이”)
2017	94 (422건)	23 (58건)	18,308	6,098	2	-	1차 집중호우(7.2~7.11) 2차 집중호우(7.14~7.16)
2016	54 (157건)	1 (5건)	16,866	198	-	-	1차 울릉도 집중호우(8.26~9.1) 2차 태풍 ‘차바’(10.3~10.6)
2015	-	-	-	-	-	-	피해없음
2014	70	2	13,978	623	-	-	집중호우(8.25)

자료 : 산림청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제정안은 산사태 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기 등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내용은 산사태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법제적으로 조의 위치는 제3장(산림재난 예방)의 제2절(산사태 예방)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바.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안 제46조는 산림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예찰·방제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관리 및 지정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산림병해충 대응을 통해 피해 점감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안 제46조제2항은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을 지정 시 관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과 해당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목 등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 대하여 통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서는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구제 및 예방 의무 부과와 아울러 방제 작업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³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 등에게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여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사. 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안 제42는 산림병해충 신고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와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의 65%가 사유림으로, 2023년 기준 사유림 개인산주는 2,172천명으로 전체 사유림 산주 2,200천명의 98.7%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산주에서 부재산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이며, 사유림 전체면적(4,116천ha)에서 개인산주 소유면적(2,949천ha)은 71.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부재산주의 소유면적(1,739천ha)의 비율은 59.0%에 이르고 있어, 현장에서는 산림병해충 발생 시 적기에 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5)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내용·기간 등을 대상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21년 기준 전국 개인산주 현황 】

(단위: 천명, 천ha)

사유림 합계		개인산주수			개인산주 소유면적		
산주수	면적	소재 (관내)	부재	소계	소재 (관내)	부재	소계
2,200	4,116	960	1,212	2,172	1,210	1,739	2,949

자료 : 산림청

산림 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의 특성상 관할 행정청의 단속인력으로 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림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인근 산림을 황폐화시킬 수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작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림병해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산림소유자 또는 지역주민 등의 신고를 통해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안 제30조(산불 신고 및 보고) 및 안 제38조(산사태 신고 및 보고)는 산불 및 산사태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정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 제42조(산불 조사),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 제5장 vs 「산림보호법」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1절 산불 조사·복구 제48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감정·실험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49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산불 대응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제2절 산사태 조사·복구	
제51조(산사태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산사태 원인과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산사태 발생지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3조(산사태 대응분석·평가) ① 산림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54조(산림병해충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산림병해충 종류별·지역별·피해도별 산림병해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방제효과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이후에 방제효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산림병해충 대응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정 안	산림보호법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시·도시행 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산불조사,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불 대응분석·평가

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는 산불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산불조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을 수립하며, 산불 대응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피해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산불방지대책의 마련 등을 통해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산불조사는 「산림보호법」 제42조³⁶⁾을 근거로 「산불조사 실무 매뉴얼」(산림청, 2009년)에 따라 i) 발화원인조사, 연소상황조사 및 피난상황조사 등의 산불원인 조사, ii) 인명 및 재산 피해조사의 산불피해 조사로 각각 구분·실시되고 있음.

【 산불조사 】

구 분	조 사 내 용
산불원인조사	· 발화원인조사 : 산불이 발생한 과정, 발생지점 및 발화요인 등 · 발견 및 진화상황 조사 : 발견 과정, 목격 및 신고자 증언 및 진화상황 등 일련의 행동 과정 · 연소상황조사 : 산불 연소경로 및 확대 원인 등의 상황 · 피난상황조사 : 피난 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산불피해조사	· 인명피해조사 : 진화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밖에 산불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재산피해조사 : 산불에 의한 피해, 진화활동으로 인한 피해, 그 밖의 피해

자료 : 산림청

36) 「산림보호법」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불조사는 범죄 사실 입증에 위한 증거자료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산불조사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³⁷⁾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산불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방화로 입증된 사항은 검거율 제고를 위해 용의차량 조회, 탐문수사 등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공조 수사를 거쳐 산불 가해자 검거 등이 추진되며,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사항은 산림사범경찰관의 수사로 진행되고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산불조사”의 정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48조제1항은 현행 「산림보호법」은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산불조사”의 개념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³⁸⁾·감정·실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감식·감정·실험” 등을 산불조사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산불조사”란 산림청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로서 조사대상자에게는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조사의 원칙·방법·절차

37) 참고자료 7(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개요) 참고

38) “감식”이란 범죄 수사에서 필적, 지문, 혈흔(血痕) 따위를 과학적으로 감정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³⁹⁾에서는 조사방법으로 i) 출석·진술요구, ii)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iii) 현장조사, iv) 시료채취, v) 자료등의 영치 등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산불조사에 “감식·감정·실험”을 포함하는 방식은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또한, 「재난안전법」⁴⁰⁾은 재난조사를 “재난발생의 원인과 재난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로 명확히 규정하여 산불·산사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림청이 수행하는 산불 및 산사태에 대한 재난조사의 범위도 이에 따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대로 산불조사에 감식·감정·실험을 포함시킬 경우 법 적용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보임.

이에 더하여 안 제48조제1항은 조사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산불조사 시 어떠한 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예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39)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9조(출석·진술 요구),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2조(시료채취), 제13조(자료등의 영치)임.

40) 「재난안전법」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산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소방관서의 소방대상물 화재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산불조사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은 현재 산불조사는 산림청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⁴¹⁾ 지정을 통해 산불 관련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 지휘하에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재난안전법」과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산불 조사”의 정의에 “감식·감정·실험”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성, 산림청의 의견, 소방청의 수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50조는 산불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이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재난안전법」상 “산불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재난안전법」⁴²⁾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50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 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재난안전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조는 안 제48조의 산불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이는 언어적 일관성 측면에서 동일한 용어를 각각 다르게 정의할 경우 수범자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6.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정안은 산림재난방지기반시설의 설치, 산악기상관측망구축·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제35조(산불방지 교육),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등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 제6장 vs 「산림보호법」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57조(산림재난방지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임도, 사방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산악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수행할 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9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활동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 예방과 대응 3. 「산림보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7.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이동·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8.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의식을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제 정 안	산림보호법
기르고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 산사태 현장예방단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은 제62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61조(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	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가. 산림재난방지기반시설의 설치

안 제57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임도, 사방댐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안 제58조는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산악기상관측시설 등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방제·복구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악기상관측망의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산림청에 따르면 산악기상관측장비⁴³⁾는 산악지역에 설치된 기상 관측을 위한 장비로 2023년 말 기준 총 4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요 용도로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날씨 정보 제공(100대 명산과 휴양림 등에 기상상황과 날씨 정보를 제공)인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⁴⁴⁾에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⁴⁵⁾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위성 관측망과 산악기상 관측망은 기능상 차이는 있을지라도 운영 목적에 있어 산림자원의 관리 및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이 내용들을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하기보다는 하나

43) 산악기상관측장비란 산악지역의 기온, 바람, 강수량 등을 관측하여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산악 날씨를 제공함.

- 장비구성 : 타워(10m), 센서부, 자료관리부, 전원공급(태양) 및 접지시설
- 관측요소 : 기온(2m/ 10m), 습도, 풍향, 풍속과 강수량 등을 1분마다 관측
- 자료전송 : M2M(LTE망)을 이용한 실시간 자료수집 및 전송

* 산악지역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하고, 강수량은 2배가 많음(2016. 산림과학원)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5년 2월 발사를 목표로 산림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동 위성을 통해 3일 주기 간격으로 실시간 관측되는 산림 관련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계획임.

의 법률 체계에 규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임.

따라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악기상관측망 취득 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산림재난관리의 측면보다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 더 부합해 보이므로, 안 제58조는 산림위성 관측망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산악기상관측망 vs 산림위성 관측망 】

구분	산악기상관측망	산림위성 관측망
목적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측력 향상을 위한 산악지역 기상 관측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u>산림재해의 예방·방제</u>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영향 파악
기능	산악지역의 기온, 바람, 강수량 등을 관측하여 <u>국민들에게 실시간 산악날씨</u> 를 제공	3일 주기 한반도 전역을 관측한 산림위성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수집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산림재해·생태·자원 등 산출물을 제공
수집 데이터	(필수)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추가) 산소포화도, 토양습도 등	(광역) 산림위성 관측 정보 (지역) <u>산악기상망</u> , 플렉스타워, LiDAR, IoT, 인공지능 등 융복합 정보
설치 장소	전국 산림 및 산림관련 시설 내 (’23년 말 480개소 운영)	(고고도) 산림위성 (저·중고도) 항공 및 드론 LiDAR 등 (지상) 플렉스타워, 지상 LiDAR, IoT 센서 등
사업기간	2012년~ (총 620개 사업 종료)	2019년~ (계속)
총사업 예산	시설 248억원(620×40백만원) (유지관리비 별도)	· 농림위성 개발(~25): 301.5억원 · 활용기술 및 인프라 구축(~25): 250.1억원 · 감보정타워 구축(30개소, ~25): 10억원 · 연간 유지관리비: 40억원(플렉스타워 및 산악기상관측망 예산별도)
주관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기타	<u>기상관측자료의 기상청 제공</u> 및 실시간 기상상황으로 재난위험 예측 활용	’25년 농림위성 발사 이후 후속 산림전용위성 개발 추진예정

자료 : 산림청

다. 산림재난방지 교육

안 제60조는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대국민 산림재난 분야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의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산림보호법」 제35조⁴⁶⁾ 및 제45조의13⁴⁷⁾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 및 산사태예방 교육은 산림교육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산불방지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위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6) 「산림보호법」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7) 「산림보호법」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023년 산림교육원의 산불·산사태·병해충 교육실시 현황 】

재난별	교육명	대상	인원 (명)	교육 일수	주요내용	비고
합계	22개 과정		687			
통합	재난안전중견리더 과정	기초지자체 5급	33	5	재난총괄 지휘·통제·관리능 력 강화	집합/2회
통합	산림재난안전과정	공무원	83	2	산림재해발생시 신속한 대 응체계 유지 등	집합/2회
산불	산불현장통합 지휘자과정	5급이상 산불기관장	42	2	산불재난대응 지휘자의 역 할 등	집합/2회
산불	산불상황관제시스 템운영과정	6급이하 산불담당자	60	3	산불실무자의 산불대응 강화 등	집합/2회
산불	산불진화지휘자연 수과정	6급이상 산불담당자	15	10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대응력 향상 등	집합/1회
산불	국방부산불담당자 직무과정	국방부 산불담당자	27	3	산불협력기관인 국방부의 현장관리자의 산불대응 강 화 등	집합/1회
산불	산불원인감식 기초과정	공무원, 산불 방지기술험회	48	2	산불피해지 원인규명과 피 해자 검거에 따른 과학적 인 증거 수집 등	집합/2회
산불	산불원인감식 심화과정	공무원, 산불 방지기술험회	24	3	산불피해지 원인규명과 피 해자 검거에 따른 과학적 인 증거 수집 등	집합/1회
산불	산불원인감식 활용과정	공무원, 산불 방지기술험회	17	2	산불피해지 원인규명과 피 해자 검거에 따른 과학적 인 증거 수집 등	집합/1회
산불	산불원인감식 전문가양성과정	공무원, 산불 방지기술험회	12	12	국제기준에 맞는 체계적인 산불조사 감식 기술 함양	집합/1회
산불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원과정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원	105	5	산불진화능력 향상 및 조 직문화 이해	집합/3회
산불	산불예방 및 진화 과정기초	일반인	83	3	예비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산불 기초 교육	집합/3회
산불	산불전문안전교육	공무원	1,049	1개월	산불의 이해, 산불행동특성, 예방 및 진화 등	연중
산사태	산악기상이해과정	산림청, 지자체공무원	77	2	기상자료 활용, 산악기상의 이해 등	집합/1회
산사태	사방공학전문가 과정	공무원	19	10	사방사업의 정책과 업무담 당자 역량강화	집합/1회
산사태	산림공학기술자 과정	공무원, 일반인	23	10	사방사업 설계, 시공 등 현 장실무 중심 교육	집합/1회
산사태	사방공학의이해	공무원	79	1개월	자연재해, 응급복구, 대응 체계 구축 등	사이버/3 회

재난별	교육명	대상	인원 (명)	교육 일수	주요내용	비고
병해충	산림병해충 관리 기본과정	공무원	30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등 현장 실무역량 향상	집합/1회
병해충	산림병해충 관리 심화과정	공무원	21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등 현장 실무역량 향상	집합/1회
병해충	산림병해충 관리 활용과정	공무원	25	2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등 현장 실무역량 향상	집합/1회
병해충	산림병해충 관리 현업컨설팅	공무원	92	1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집합/3회
병해충	산림병해충 이해	공무원	138	1개월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기술 등	사이버/6 회

자료 : 산림청

【 2023년 산불방지 위탁교육 실시현황 】

구분	과정별	대상	인원 (명)	수입 (천원)	교육내용
계				2,220,747	
한국치산 기술협회	산사태 현장예방단 직무교육	일반	652	32,600	산사태 현장예방단 임무 및 역할 실습
소계				1,776,597	
한국산불 방지 기술협회	산불방지전문교육	진화대 등	2,490	173,255	산불 이론 및 진화 실습
	산불방지기본교육	유관기관 직원 등	737		산불 이론 및 진화 실습
	산불방지에방교육	일반	864		산불 이론
	산불방지전문교육	진화대 등	20,546	1,603,342	산불 이론 및 진화 실습
	산불방지기본교육	유관기관 직원 등	5,833		산불 이론 및 진화 실습
	산불방지에방교육	일반	10,541		산불 이론
소계				419,900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전문기술교육	담당 공무원	126	25,200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정 책·지침
		예찰·방제단	853	367,516	재선충병 예찰·방제기술 실습
		방제사업자 (설계·감리)	197	29,550	재선충병 설계·감리 실무 및 실습
		방제사업자 (시공)	194	27,160	재선충병 시공 실무 및 실습

구분	과정별	대상	인원 (명)	수입 (천원)	교육내용
	산림병해충 관리분야 드론교육	담당 공무원	42	-	산림병해충관리분야 드론조종 실습

자료 : 산림청

제정안은 현재 산림재난별로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등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산림재난별 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60조는 산불재난방지 교육의 의무화와 함께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60조에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60조제2항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담당 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무교육 실시주기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교육실시의 주체가 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이 중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소속기관”은 모두 산림청 소속기관이 되므로 중복하여 규정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실시 주체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60조제3항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기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안 제66조에 따라 산림재난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⁴⁸⁾에서 수행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과 같이 수탁기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넷째,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산림교육원 및 수탁기관의 교육대상을 보면, 주로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예찰·방제단 정도로 파악되고,⁴⁹⁾ 특히 산불유관기관⁵⁰⁾·산사태유관기관⁵¹⁾의 소속 공무원·임직원

48)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한국산불방지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됨.

이나 지역주민, 일반국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해서는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난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예를 들면, 산림교육원에서 일반인 대상의 교육으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기초’ 과정이 있는데, 연간 4회(1회 3일간) 정도 실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산림재난별·교육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교육횟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안 제60조제3항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탁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 49)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교육원은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위탁의 경우 주로 공무원, 예찰방제단, 진화대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음.
- 50) 「산림보호법 시행령」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 51) 「산림보호법 시행령」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7.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면서,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사업 수행 및 예산·결산, 업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 제정안 제7장 vs 「산림보호법」 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62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제 정 안	산림보호법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임원 및 직원) 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5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6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 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3. 산불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 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 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의5(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

제 정 안	산림보호법
2. 산림재난 조사·예찰·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산림재난방지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국내외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점검 및 안전진단 10. 산림재난방지와 관련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기부금	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6(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산림보호법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8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업무 지도·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인데, 공단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및 연속성 측면, 국가 재정소요 측면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해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⁵²⁾에서, 산사태와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교육·홍보 등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한국치산기술협회”⁵³⁾에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에

52) 「산림보호법」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3. 산불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53)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임도시설의 점검·안전진단
2. 사방기술·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관한 예찰·방제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모니터링센터”⁵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제정안은 산림재난별 삼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 예방·대응·복구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산림재난대응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임.

또한, 제정안은 산림재난 분야에서 공단의 전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이행력을,⁵⁵⁾ 공단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⁵⁶⁾을 함으로써 법적 실행력을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4)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55) 참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등에서는 공단이 아닌 자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56) 참고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에서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벌 적용 시 공무원의 제 규정을 두고 있음.

각각 확보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정안은 통합기관의 명칭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부여된 산림재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⁵⁷⁾

또한, 제정안은 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의 성격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⁵⁸⁾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7) 【 공사 및 공단의 비교 】

구분	공사	공단
법인격	통상 자본금이 있음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자본금이 없음 재단법인의 성격
업무	상품생산 및 용역제공 등의 기업 활동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정부업무 또는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법규준용	「상법」 중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 준용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출처 :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p.496

58)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둘째, 산림청에 따르면, 공단은 산림청 소관 ‘한국치산기술협회’,⁵⁹⁾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및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이들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적절한 방식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10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통해 「사방사업법」상 한국치산기술협회의 근거 규정(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모두 삭제하고 있는데,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시설의 점검·안전진단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고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의 지정기관을 감안할 때,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이러한 개정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더군다나 안 부칙과 같이 다른 법률 개정방식에 따를 경우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수행해 왔던 기존 사업들의 법적 근거는 없어지게 되고 관련 법률의 내용에도 실체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 법률의 개정에 의한 기존 법률 조항의 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59) 2024년도 2월 6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8. 보칙

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산림재난보험, 포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상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제48조(포상),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등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 제8장 vs 「산림보호법」상 관련 규정 】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7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재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산림재난보험 등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填)할 수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填)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난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3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2.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3.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제74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	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5조(권리·의무 등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76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수 있다. - 제23조에 따른 현지점검 - 제36조제3항에 따른 산불자율진화대의 구성 및 설치 - 제48조에 따른 산불 조사 - 제51조에 따른 산사태 조사 - 제5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 제55조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제77조(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산림재난방지기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3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

제 정 안	산림보호법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과 제76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4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가.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안 제76조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산불조사·산사태조사 및 산림병해충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통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제정안은 안 제36조제3항에 따른 산불자율진화대의 구성 및 설치에 대한 업무도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제정안은 산불자율진화대의 참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 주민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 구성 주체는 지역주민의 사정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 산림을 잘 알고 있고 임업인이나 산림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산림조합에서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산림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 제78조는 안 제64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과 제76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대해서 형벌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보완 필요

현행 「재난안전법」⁶⁰⁾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⁶¹⁾의 경우 대부분 원인이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되나, 산불피해지에 대한 벌채 및 조림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국

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61)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32%, 연평균 171.4건), 논·밭두렁소각(13%, 69.6건), 쓰레기소각(12%, 68.2건), 담뱃불 실화(6%, 30.0건), 성묘객 실화(3%, 16.2건) 등임.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실정임.

다만,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재난복구지원금(사유시설, 공공시설)에 대하여 청구 소송⁶²⁾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재난안전법」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및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측면을 감안할 때, 산림재난에 대한 원인자 부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⁶³⁾,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⁶⁴⁾ 등은 원인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2) 2019년 4월 4일 한전 송전설비(노후 전선의 부실 시공·관리 등 하자)의 불꽃 발생으로 발화된 산불로 고성군, 속초시 사유시설·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사유시설) 비용상환청구의 소(2021.4.21. 제기) 및 (공공시설)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4.1. 제기)이 진행 중임.

63)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4)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포상

안 제73조는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산불발생을 신고한 자,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방지 활동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호 및 제3에서는 “자”를, 안 제2호에서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 조문의 간결성·일관성 측면에서 “자”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1

제정안 및 「산림보호법」 상 이관 조문 비교

장·절	조	조 제목	「산림보호법」 과 비교
제1장 총칙	1조	목적	신설
	2조	정의	- (제1호~제4호) 「산림보호법」 상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일부 수정하여 정의 및 이들을 산림재난으로 새롭게 명명 - (제5호) 「산림보호법」 상 산불방지, 산사태예방, 예찰·방제에 대한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정의 - (제6호) 「산림보호법」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정의와 동일 - (제7호 ~ 제8호) 「산림보호법」 에 분산 정의된 용어를 통합하여 규정 - (제9호) 「산림보호법」 상 ‘산사태정보체계’를 확대 및 세분화시키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정의규정 참고하여 신설 - (제10호, 제11호, 제12호) 「산림보호법」 상 ‘산사태정보체계’를 확대 및 세분화시키기 위해 신설 - (제1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준용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4조	적용범위	신설
	5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신설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7조	산 립 재 난 방 지 기본계획	-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제20조제1항) -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제28조 제1항) -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제45조의2 제1항)
	8조	산 립 재 난 방 지 지역계획	-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장기계획(제20조제2항) -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제28조제2항) -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제45조의2 제3항)
	9조	산 립 재 난 방 지 시행계획	- 전국·지역 연도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제21조) - 전국·지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제29조)

장·절		조	조 제목	「산림보호법」과 비교
				- 전국·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제45조의3)
		10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신설 -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다른 분야에도 확대
		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다른 분야에도 확대
		12조	산림재난상황실	신설
		13조	산림재난대응단	신설
제3장 산림 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14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제30조 유사 - (제1항)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시행계획”으로 변경 - (제2항)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시·도·시·군·구시행계획으로 변경
		15조	산불 예방 등	제33조 유사 - (제5항)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에 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 수행 추가 - (제6항) 산불취약지역 실태조사 내용 추가
		16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34조 유사 -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내용 추가. - (제4항) 제2호에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의 금지 추가
	제2절 산사태 예방	17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5조의4 동일
		18조	산사태 예방 등	신설
		19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7 유사 - (제1항) 안 제10항의 “산림재난위험도평가” 결과 반영 내용 추가
		20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8 유사 - “지역산사태관리기관”으로 수정 - (제1항)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정의 - (제5항) 안 제18조의 “산사태 관계인”으로 수정
		21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45조의9 동일
		22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제45조의10 동일
		23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제45조의11 동일
		24조	산사태취약지역	제45조의12 동일

장·절		조	조 제목	「산림보호법」 과 비교
	제3절 산림 병해충 예방		등 토지 매수·교환	
		25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제22조 유사 - (제1항) “예찰”, “방제” 용어 정리
		26조	산림병해충예방 등	신설
		27조	예찰	제23조 유사 - (제2항) 안 제10항의 “산림재난위험도평가” 결과 반영 내용 추가
제4장 산림 재난 대응	제1절 산불 진화 등	28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31조 동일
		29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2조 동일
		30조	산불 신고 및 보고	제36조 동일
		31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신설
		32조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43조 규정을 추가하여 신설
		33조	산불 진화 통합 지휘	제37조 유사 - (제4항) 초대형 산불 및 국가재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
		34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 설치·운영	제38조 유사 - (제2항) “산불유관기관”을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 변경
		35조	협조	제39조 유사 - (제1항) 협조 요청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
		36조	산불진화단 등 설치	제41조 유사 - (제1항) 설치주체에 지역산불관리기관장 추가 - (제2항)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 - (제3항) 산불자율진화대 내용 추가
	제2절 산사태 대응	37조	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등	신설
		38조	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45조의14 유사 - (제1항) “인접지역”을 “잇닿은 토지”로 변경
		39조	산사태대응팀 설치	제45조의15 동일
		40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등	제45조의6 유사 - (제3항) 조치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

장·절		조	조 제목	「산림보호법」과 비교
	제3절 산림병 해충 대응 등	41조	산사태 긴급점검	신설
		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신설
		43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제24조 동일
		44조	방제	제25조 유사 - (제1항) 공고주체에서 산림청장 삭제 - (제3항) 산림청장이 고시
		45조	방제사업 설계· 감리	제26조 동일
		46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제27조 동일
		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신설
제5장 산림 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 복구	48조	산불 조사	제42조 유사 - (제1항) 산불조사에 대한 정의 추가
		49조	산불피해지 복구 등	제43조 동일
		50조	산불 대응분석· 평가	제45조 동일
	제2절 산사태 조사· 복구	51조	산사태 조사	신설
		52조	산사태 발생지 복구	제45조의16 동일
		53조	산사태 대응분 석·평가	제45조의17 유사 - “연도별대책”을 “시행계획”으로 변경
	제3절 산림병 해충 조사	54조	산림병해충 조사	신설
		55조	방제효과조사	신설
		56조	산림병해충 대 응분석·평가	신설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57조	산림재난방지기 반시설의 설치	신설
		58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신설
		59조	산림항공기 운용	제50조와 유사 - (제1항) 항공기 운영 활동을 구체화

장·절	조	조 제목	「산림보호법」과 비교
	60조	산림재난방지교육	제35조(산불방지 교육) 및 제45조의13(산사태 예방 교육)의 내용을 통합 - 산림병해충예찰방제 교육 추가
	61조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신설 - 「산림보호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산림 병해충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을 안 제60조에 통합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62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별로 운영된 3개 기관·단체를 통합 - (산불방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 보호법」 제35조의2 ~ 제35조의7 -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산림보호법」 제27조의2 - (산사태)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63조	정관	
	64조	임원 및 직원	
	65조	임원의 결격사유	
	66조	사업	
	67조	공단의 운영비	
	68조	예산과 결산	
	69조	업무 지도·감독	
	70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7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44조(산불방지)에 추가로 산림병해충, 산사태 사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72조	산림재난보험 등 가입	제47조 유사 -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
	73조	포상	제48조 유사, 제48조제1호(신고·고발한 자) 삭제
	74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제49조 유사,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산림 재난방지’를 위한 경우로 「산림보호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75조	권리의무 등 승계	제51조 동일
	76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52조 동일
	77조	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요구),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요구), 산림병해충에 대해 문책요구 근거 마련
	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
제9장 벌칙	79조	벌칙	제53조~제57조 유사
	80조	과태료	

참 고 2

산사태 관련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비교표

구분	기초조사(현장에서 간략 추출)	실태조사(취약지역 지정여부 결정)																		
관리주체	산림청장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																		
조사대상 모집단	산사태위험지도의 정보 기반으로 추출	기초조사 대상지 중 실태조사 필요지역 (약 40% 예상)																		
현장조사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목적 : 실태조사 대상지 관별	목적 : 취약지역 지정 필요성 조사																		
	내용 : <table><tr><th>항목</th><th>조사내용</th></tr><tr><td>위치</td><td>개황정보(주소 등), 전체 유역 면적</td></tr><tr><td>규모</td><td>우려구간 관별 우려구간의 위치 및 규모 사진/공간정보(우려구간 작도)</td></tr><tr><td>유형 분류</td><td>산사태, 토석류 현장 확인 후 분류 조사자 의견 및 실태조사 필요성 판단</td></tr></table>	항목	조사내용	위치	개황정보(주소 등), 전체 유역 면적	규모	우려구간 관별 우려구간의 위치 및 규모 사진/공간정보(우려구간 작도)	유형 분류	산사태, 토석류 현장 확인 후 분류 조사자 의견 및 실태조사 필요성 판단	내용 : <table><tr><th>항목</th><th>조사내용</th></tr><tr><td rowspan="3">붕괴 침식 정도</td><td>현장조사(위험등급 확인)</td></tr><tr><td>안정해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유출량 및 유출범위 설정)</td></tr><tr><td>현황도 작도(유역, 취약구간)</td></tr><tr><td rowspan="3">토지 · 산림 현황</td><td>공간정보(취약지역 구역, 대피경로 작도) 분석</td></tr><tr><td>관리 계획 수립</td></tr><tr><td>취약지역 필지별 면적, 소유자 파악</td></tr></table>	항목	조사내용	붕괴 침식 정도	현장조사(위험등급 확인)	안정해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유출량 및 유출범위 설정)	현황도 작도(유역, 취약구간)	토지 · 산림 현황	공간정보(취약지역 구역, 대피경로 작도) 분석	관리 계획 수립	취약지역 필지별 면적, 소유자 파악
	항목	조사내용																		
위치	개황정보(주소 등), 전체 유역 면적																			
규모	우려구간 관별 우려구간의 위치 및 규모 사진/공간정보(우려구간 작도)																			
유형 분류	산사태, 토석류 현장 확인 후 분류 조사자 의견 및 실태조사 필요성 판단																			
항목	조사내용																			
붕괴 침식 정도	현장조사(위험등급 확인)																			
	안정해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유출량 및 유출범위 설정)																			
	현황도 작도(유역, 취약구간)																			
토지 · 산림 현황	공간정보(취약지역 구역, 대피경로 작도) 분석																			
	관리 계획 수립																			
	취약지역 필지별 면적, 소유자 파악																			

참 고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별표 10]

구 분	추진절차	비 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관심 대상 분류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관보, 공보, 소유자 등
이의신청	동의 등 토지사용 의견서 징구	열람공고 기간 내(30일 이상)
지정위원회 심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 정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유지관리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지정해제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

참고 4

2022~2023년 대형산불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현황

□ 2022년

(단위: 시간, ha, 대, 명)

지 역	발 생 원 인	발 생 일 시	진 화 일 시	진 화 간	피 면 해 적	진화자원			비 고
						헬 기	인력	장비	
계					24,015.67	1,550	97,668	6,606	
영덕	전신주 스파크	02.15.(화)	02.17.(목)	58시간 29분	405.69	57	3,313	197	
합천·고령	입산자 실화	02.28.(월)	03.01.(화)	27시간 40분	813.89	95	2,566	187	① 합천 268.59 ② 고령 545.30
울진·삼척 (특)	도로변 발화 추정	03.04.(금)	03.13.(일)	213시간 43분	16,301.98	683	40,528	3,551	① 울진 14,140.01 ② 삼척 2,161.97
영월	화목 보일러불 씨	03.04.(금)	03.08.(화)	93시간 15분	184.01	42	3,412	145	
강릉·동해 (특)	방화	03.05.(토)	03.08.(화)	89시간 52분	4,190.38	96	27,587	1,055	① 강릉 1,454.76 ② 동해 2,735.62
봉화	화목 보일러재 투기	04.05.(화)	04.06.(수)	17시간 31분	130.00	52	1,505	160	
서산	쓰레기소 각	04.09.(토)	04.10.(일)	30시간 19분	158.11	41	2,346	54	
군위	입산자 실화	04.10.(일)	04.12.(화)	49시간	225.72	123	2,286	232	
양구	낙엽 소각 추정	04.10.(일)	04.12.(화)	41시간 20분	716.31	95	3,378	168	
울진	용접 작업중 비화	05.28.(토)	05.29.(일)	23시간 34분	228.76	66	2,335	208	
밀양	원인 미상	05.31.(화)	06.03.(금)	72시간 31분	660.82	200	8,412	649	

* (특) : 특별재난지역 선포

□ 2023년

(단위: 시간, ha, 대, 명)

지 역	발 원 생 인	발 일 생 시	진 일 화 시	진 시 화 간	피 면 해 적	진화자원			비 고
						헬 기	인력	장비	
계					4,074.60	284	21,186	8,298	
합천	입산자실화 추정	2023.3.8. 14:10	2023.3.11. 09:15	67:05	179.10	77	3,186	161	
하동	입산자실화 추정	2023.3.11. 13:24	2023.3.12. 16:13	26:49	128.50	59	2,280	104	
금산·대전 (특)	입산자실화 추정	2023.4.2. 12:22	2023.4.4. 17:00	52:38	889.36	37	1,502	92	① 금산 242.91 ② 대전 646.45
홍성 (특)	담뱃불실화 추정	2023.4.2. 11:00	2023.4.4. 17:40	53:00	1,337.00	20	3,019	3,693	
당진 (특)	입산자실화	2023.4.2. 11:19	2023.4.4. 17:00	53:41	98.54	11	1,371	515	
보령 (특)	농산폐기물 소각추정	2023.4.2. 13:46	2023.4.3. 16:00	26:14	97.43	7	1,439	38	
부여 (특)	담뱃불실화 추정	2023.4.2. 15:03	2023.4.2. 18:35	3:32	24.04	2	469	35	
옥천 (특)	담뱃불실화 추정	2023.4.2. 11:23	2023.4.3. 18:00	30:37	85.37	7	391	28	
함평 (특)	쓰레기소각 추정	2023.4.3. 12:19	2023.4.4. 18:00	29:41	681.72	11	1,177	1,074	
순천 (특)	건설현장 실화추정	2023.4.3. 13:02	2023.4.4. 17:15	28:13	188.35	12	1,032	1,181	
영주 (특)	양봉장훈증 불씨부주의	2023.4.3. 14:15	2023.4.4. 18:00	27:45	244.50	37	1,827	193	
강릉 (특)	전선단선	2023.4.11. 08:22	2023.4.14. 14:00	77:38	120.69	4	3,493	1,184	

* (특) : 특별재난지역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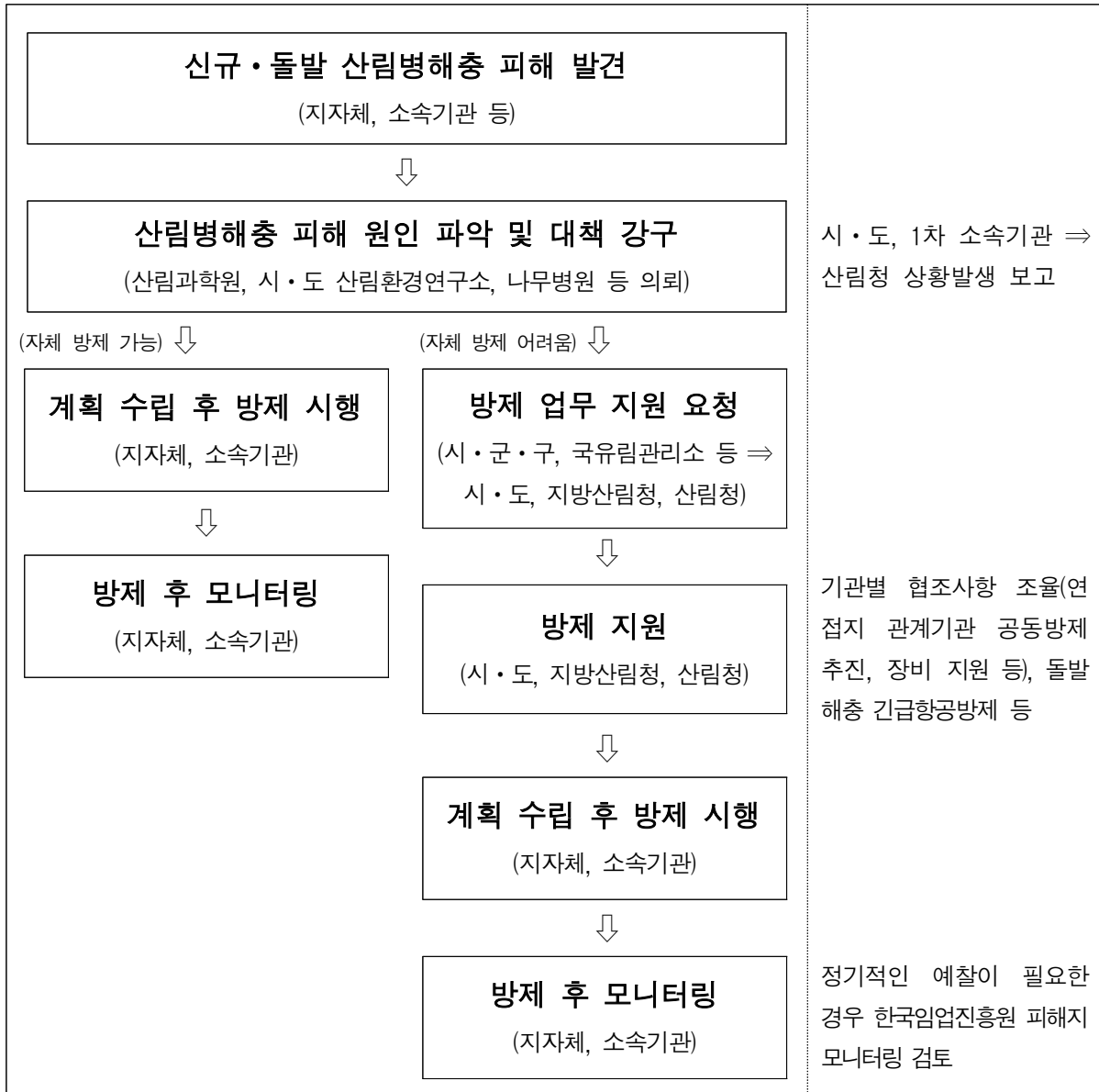
참고 5

연도별 산사태 피해 물량 및 태풍 현황

연도별	피해물량(ha)	인명피해(사망)	국비 복구액(백만원)	태 풍 명
(‘20~’29)	1,343 / -	9 / -	206,851	(합계) / (평균)
’21	27	-	7,067	-
’20	1,343	9	199,784	집중호우, 마이삭, 하이선
(‘10~’19)	2,263 / 226	53 / 5	219,650	(합계) / (평균)
’10	206	1	11,426	곤파스
’11	824	43	73,944	무이파
’12	491	1	47,120	볼라벤, 덴빈, 산바
’13	312	3	31,702	집중호우
’14	70	-	6,456	집중호우
’15	-	-	-	-
’16	54	-	8,570	차바
’17	94	2	10,423	집중호우
’18	56	-	6,024	쁘라빠룬, 솔릭, 콩레이
’19	156	3	23,985	다나스, 크로사, 미탁
(‘00~’09)	7,126 / 713	81 / 8	552,952	(합계) / (평균)
’00	182	7	5,941	프라피룬, 사오마이
’01	185	6	14,017	-
’02	2,705	35	123,933	라마순, 루사
’03	1,330	10	104,472	소텔로, 매미
’04	233	-	19,286	디앤무, 메기
’05	469	9	44,899	나비
’06	1,597	9	192,741	에위니아
’07	73	-	7,811	나리
’08	102	-	13,582	-
’09	250	5	26,270	-
(‘90~’99)	3,493 / 349	227 / 23	90,432	(합계) / (평균)
’90	178	16	2,593	-
’91	727	48	8,382	글래디스
’92	-	-	-	-
’93	109	9	2,620	로빈
’94	66	-	1,278	브렌던, 더그
’95	423	31	9,867	페이, 재니스
’96	257	2	6,621	-
’97	33	6	1,042	-
’98	1,281	92	39,083	예니
’99	419	23	18,946	올가, 바트
(‘80~’89)	2,308 / 231	365 / 37	14,677	(합계) / (평균)
’80	451	58	1,502	어키드
’81	236	25	589	애그니스
’82	91	9	344	앨리스
’83	-	-	-	-
’84	100	18	523	홀리
’85	30	50	232	리키드
’86	12	-	44	베라
’87	1,002	156	7,559	셀마, 다이나
’88	113	15	1,007	-
’89	273	34	2,877	쥬디

참고 6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절차



□ 목 적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증진 및 정책개발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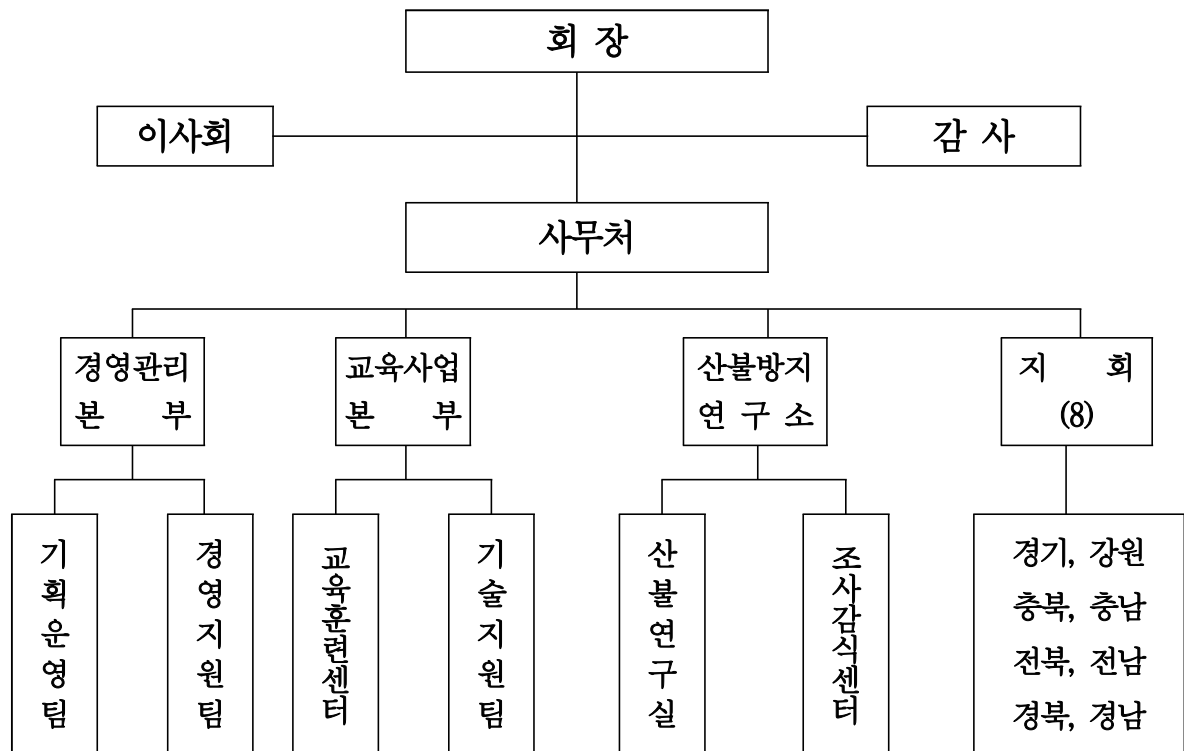
□ 설립경과

- 설립허가 : 2015. 1. 15(산림청장) → 비영리 특수법인
 - 근거 : 산림보호법 제35조의2,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인등기 : 2015. 1. 28(등록번호 : 160171-0009592)
- 사업자등록 : 2015. 3. 12(북대전 세무서)
 - 법인사업자 : 본점(등록번호 : 318-82-00566)
 - 사업의 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산불위험지 조사, 연구, 용역, 교육 등

□ 협회현황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68번길 45, 세영빌딩 2~3층
- 고 문 : 김 용 한(前 산림청 차장), 곽 주 린(前 지방산림청 청장)
- 회 장 : 이 규 태(前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임 원 : 9명
 - 이 사 : 7명(이규태, 이종수, 김동현, 안광태, 이상구, 전창석, 박도환)
 - 감 사 : 2명(윤차규, 박종권)
- 사무처 : 40명 / 비상근(1), 별정직(11), 정규직(18), 계약직(10)
 - 본 회 : 16명(회장1, 사무처장1, 본부장2, 센터장2, 팀장2, 과장4, 대리2, 사원2)
 - ※ 비상근(1), 별정직(3), 정규직(10), 계약직(2)
 - 지 회 : 24명(경기3,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3, 경북3, 경남3)
 - ※ 별정직(8), 정규직(9), 계약직(7)

o 조직도



□ 사업소개

- o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 훈련
- o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 o 산불방지 시설 및 장비 관련 사업
- o 산불위험지(취약지) 조사
- o 산불소화시설 대상지 타당성 조사
- o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 o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및 복구
- o 산불방지 기술 정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o 대국민 산불예방 및 홍보
- o 산불방지 관련 간행물 발간
- o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o 기타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산불방지 관련 사업